

붙임 2 핀테크 1년, 금융개혁 현장점검 주요 건의사항

< 손해보험협회 건의사항 >

- 최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(‘보험다모아’)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
 - 이에 따라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* 전면 재정비 필요
- * (예) (상품권유단계) 상품설명서/가입설계서 교부 → (계약체결단계) 청약서 작성 및 약관 교부 → (승낙이후단계) 증권 발송
- 보험료 연체시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 완화를 요청

< 금융위원장 답변 >

- 최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(12.2)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바 있으며,
 - 다른 업권에 있어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,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권유·청약·승낙이 가입 홈페이지상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
 - 이러한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,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*도 폐지 예정
- * 현재 온라인상의 보험가입,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의 경우에 적용
-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음
- * 현재 서면, 녹취, 공인전자서명 등만 인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 허용

< 은행연합회 건의사항 >

-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서
 -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*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
- *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, 핀테크 업체(제3자)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서면상 동의가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나,
 - 금융실명법 제4조상의 서면상 동의에는 전자적 서명 방식이 포함되므로 온라인 상에서 고객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
- 또한 명의인의 거래정보 비밀보장과 무관하게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 가능
- ※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·이메일 등으로 확인 (최대 유효기간 5년)